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직권조정 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직권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직권조정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이 상실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중재 신청

당사자 쌍방이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언론중재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중재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VI. 소송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에 대한 절차뿐만 아니라 피해구제에 대한 소송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은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송이 제기되면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수 있다. 언론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